

참고

금융규제 개혁방안 기대효과

- 금융규제, 이렇게 바뀝니다 -
- 현장발굴 불합리한 규제사례 -

2014. 7. 10.



금융위원회

전업 금융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도 신규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. (25p)

- **(현황)**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
 - * 투자매매·중개·집합투자·신탁업 : 42종 인가단위 운영
 - * 투자자문·일임업 : 6종 등록단위 운영
- 세분화된 인가 단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·특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,
- 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인가 획득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
- **(개선)**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업무단위 체계를 개편(인가 업무단위 42개 → 13개)
 -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,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(Add-on)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 - *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시행, 겸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
- **(기대효과)**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으며,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

사모펀드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가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. (26p)

- **(현황)**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시, 업무 범위 확장시 매번 인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활발한 진입 및 사업 구조 개편이 제한
- **(개선)** 공모펀드 운용업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도록하고,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및 업무범위 확장시에는 등록으로 절차 간소화
 - 사적 계약이 존중되는 자문·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*,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로 설정
 - *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→ 등록은 제도 개선 추진 중('14.4월 입법예고)
 -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(Add-on)할 수 있도록 허용
 - ☞ [등록] 자문·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(종합) → [인가] 공모펀드(단종 : 증권/실물*) → [등록] 공모펀드(종합)
 - *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(증권, 헤지, 부동산, 특자)인 인가 단위를 2단위(증권, 실물)로 대폭 축소
 -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
 - (현행) 증권단종(40억원) → 헤지 add-on(+60억원) → 부동산&특자 add-on(+40억원)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: 총 140억원
 - (개선) 사모(20억원) → 증권단종 add-on(+20억원) → 부동산&특자 add-on(+40억원)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: 총 80억원(△60억원)
- **(기대효과)**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역량 있는 운용사의 진입 및

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사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30p)

- **(현황)** 저금리·고령사회 도래로 개인의 효율적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독립자문채널의 중요성이 부각
 - 현재 자문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,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시장은 크게 부족

- **(개선)**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추진
 - 선진사례*를 참고하여, 자문업자가 판매·제조사의 이해관계와 독립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자문하기 위한 독립성 요건 정립
 - * 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
 - 영국 :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(whole of market), 판매수수료 수취 금지
 - 싱가포르 : 경제적 이익의 독립성, 취급상품의 독립성, 지분관계의 독립성
 -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등에 대한 독립 금융상품 자문업을 우선 도입하고,
 -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(국회 계류중)을 통해 독립자문업자의 업무영역을 타 금융상품으로 확대 추진

- **(기대효과)** 중립적 자문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, 생애자산 관리서비스의 기반을 마련
 -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판매보수 인하, 온라인·개방형 판

매채널 활성화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을 유도

21

**세제혜택을 받는 계좌에 예·적금, 펀드,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.
[31p]**

□ **(현황)**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된 금융상품*이 있으나 실질적 재산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

* 재형저축, 소득공제장기펀드, 연금저축계좌, 즉시연금 등

- 가입자를 제한(예: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)하거나 특정 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
-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을 장기 보유해야 하는 등 이동성이 부족하여 상품성이 다소 떨어짐

□ **(개선 방안)**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검토

-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 내에 상품을 자유롭게 편·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 제고
- 예·적금 자산에 비해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인이 크도록 상품을 설계

※ 영국의 ISA와 일본의 NISA 운영 사례

- ① 영국(Individual Savings Account) : 주식, 채권, 펀드, 보험 등을 단일 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
- ② 일본(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) : 주식, 주식형펀드 등 주식관련 상품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

□ **(기대 효과)** 상품성 있는 세제혜택 상품을 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

- 투자 상품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

금융회사 해외점포는 은행·증권·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
[32p]

- (현황) IMF 이후 금융회사의 역외 겸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
 - IMF 이전('93~'97년)에는 대우계열(대우증권 등)이 베트남·헝가리·루마니아·우즈벡 은행을 인수 또는 설립한 사례가 있었으나,
 - IMF 이후에는 동부화재의 라오스 은행 지분 인수('12년), 한화생명의 말레이시아 은행 설립('12년)은 모두 지도로 불허
 - * 보험사의 은행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건전성 저해로 이어질 우려
 - * 계약자의 몫(책임준비금)으로 무분별한 업무확장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

□ (개선) 금융회사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법에 따른 유니버설 बैं킹 허용

	성격	기존입장	개선방안
현지법인	· 본점과 독립된 법인	· 해외법 적용 ※행정지도로 국내법도 적용	· 행정지도 철폐
지점	· 본점의 일부 (독립법인이 아님)	· 국내법 및 해외법 동시 적용	· 영업규제, 업무범위는 해외법만 적용

※ 조치계획 : 은행법·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

<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운영가능한 업종 >

구분	내용	리스크 검토	해당국
투자일임업	■ 고객이 은행에 자산운용을 위탁	■ 본점 전이 위험 없음 (투자리스크 발생시 고객손실)	주요국
투자자문업	■ 금융상품 선택시 자문 제공	■ 수수료 수취를 기본으로 하므로 리스크 없음	주요국
유가증권 중개 (투자중개업)	■ 주식·채권매매중개 (예탁계좌)	■ 타인의 계산이므로 리스크 없음	홍콩 영국
상품파생매매·중개	■ 상품(원유, 곡물 등) 파생거래 중개	■ 매매의 경우 리스크 있으나, 중개는 리스크 없음	홍콩 영국

□ (기대효과)

- 고객들에게 은행·증권·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
 - 은행 등은 장기간 거래관계로 재무상황·금융수요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회사채 발행·투자자문 등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
 - 해외법 적용으로 현지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경쟁기반을 갖춘 국내 금융회사들이 한국기업 대상 영업에서 탈피하고 현지고객 유치·영업 다각화 등 적극적 해외영업 확대 가능
 - 현지 은행 자회사를 보험·증권 등의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방카슈랑스·펀드판매 등 적극적 영업 용이
 - 별도 영업망 구축비용 절감, 고객 확대 등 업권간 시너지 효과 창출
- ⇒ 수수료 경쟁·업권간 땀따먹기식 경쟁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확대로 한국 금융산업 외연 확대

□ **(현황)**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*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산업의 고유 특성과는 괴리되어 운영되는 측면

* 증권사가 직접 다양한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영업(PI투자 · 위험인수 등)하는 특성 반영 ⇨ 건전성 · 유동성 규제의 혼합방식

○ NCR 규제는 자산운용사 해외진출* 및 트랙 레코드 구축**을 제약하고 연기금 등이 건전성 지표로 왜곡해서***사용하는 측면

* 해외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시 출자지분이 전액 자본 차감되어 NCR 급락

** 트랙레코드 구축에 필요한 자사 운용펀드 투자를 저해

*** 연기금 등은 거래 운용사 선발시 NCR에 대해 高高益善으로 평가

□ **(개선)** 자산운용산업 특성을 반영*해 현행 NCR규제 대신 자기 자본 등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

* 예금 등 부채성 금융상품 없이 고유자산과 절연된 Vehicle을 통해 고객자산을 운영

○ 건전성 규제는 손해배상 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해외 사례* 등을 감안하여 AUM 대비 추가 자본 적립 등 보완 방안 마련

* EU :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시 AUM의 0.02% 추가 자본 적립 의무

□ **(기대효과)** NCR 유지를 위해 필요이상 보유한 유희자본 축소하거나 활용도를 높여 자본효율성 제고

○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(seeding) 투자로 운영실적을 축적해 기관투자자 영업에 활용하거나,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등 자본의 활용도 제고 가능

**자산관리 상담에서부터 예·적금, 펀드가입, 채권매입
까지 One-Stop으로 한 점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
있습니다. [29p]**

□ **(현황)** 계열사 관계인 은행·증권·보험회사가 사무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*으로 시너지 창출 제한

- * ① 사무공간 물리적으로 구분 ② 칸막이로 영업직원간 직접 왕래 방지, ③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등

○ 불필요한 공간 구분으로 인한 비용발생, 고객이 은행, 증권, 보험사 직원을 따로 만나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

- * 은행 직원이 상담후 나가면 증권 직원이 들어와 상담을 해야 해 고객은 재정상태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

□ **(개선)** 복합점포에서의 계열사간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을 **자율화***하고, 계열사간 고객 동의를 기초한 **정보공유 간소화****

- *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, 공동상담실 사용기준 명확화, 업권간 사무공간 구분방식 자율화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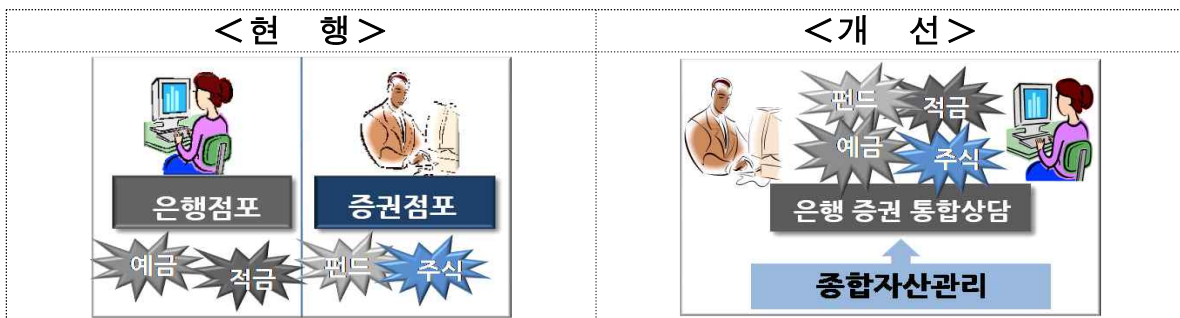
** (현행) 정보제공시 마다 동의 필요→실질적으로 정보공유 불가
(개선) 공동상담실 내에서 기간, 목적, 제공자 특정下 정보공유 가능

❖ 복합점포: 기존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다른 금융회사가 들어와 함께 운영되는 방식

□ **(기대효과)** 고객은 복합점포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·증권·보험회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**종합자산관리 서비스**를 받을 수 있고

○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행·증권·보험 상품 가입도 가능

- * <고객이동> (기존) 은행상담→증권상담→은행상품가입→증권상품가입
(개선) 상담 및 상품가입



금융지주 그룹내 임직원의 겸직이 쉬워져 국민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금융지주의 시너지효과도 높아집니다. (41p)